

# 2025년 11월 28일 시행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 정리

작성일: 2025년 12월 1일 / 작성자: 김웅 변리사(일비스변리사학원, 해움특허법인)

**붉은 색 글씨를 확인해 주세요.**

## 1. 일부심사제도 법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추가

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법 제3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거나 법 제46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.

- 예1) 이의신청으로 등록이 취소된 디자인과 동일·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한 경우
- 예2) 심판 또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동일·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하거나, 해당 절차를 통해 무효가 확정된 디자인과 동일·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한 경우
- 예3) 동일 출원인이 동일·유사한 디자인을 복수로 출원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타인의 동일·유사한 디자인을 중복 출원한 경우
- 예4) 그 밖에 심사관이 해당 출원디자인이 제3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6조제1항·제2항에 해당함이 명확하다고 판단한 경우

## 2. 이의신청제도 법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추가

### 1) 이의신청인 관련

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법 제68조(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)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제68조(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)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하여야 하지만, 이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

2.1.2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(1) 디자인권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, 서면경고, 소장, 가처분신청서 등의 형식으로 침해 주장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
- (2)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또는 콘텐츠 유통서비스로부터 권리침해 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이나 안내문 또는 경고문 등을 받은 경우

(3) 그 밖에 심사관이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

## 2) 이의신청기간 관련

법 제43조(비밀디자인)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그 디자인에 대한 비밀이 해제되어 도면 등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의 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가 법 제43조(비밀디자인)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공보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

## 3)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 관련

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유,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.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. 이의신청서에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주장이 기재되지 않았거나, 그 신청의 전체취지로 보아 실질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주장이 불충분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이 침해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도록 보정을 명한다. 이의신청인이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,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결정으로 각하한다.

## 3. 부분디자인의 명칭 기재요건 완화(시행규칙에 따른 개정)

출원서 및 도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[예]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부분의 명칭을 기재 할 수 있다.

예) **인정** 컵, 컵의 손잡이, 컵의 부분 / **⊗ 불인정** 컵의 코너, 컵의 모퉁이, 컵의 중앙, 컵의 상부, 컵의 하부 등

## 4.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삭제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

디자인심사기준 전체에서 “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” 관련 내용 삭제

끝.